

직권조치결과 공고문

「주민등록법」 제20조제7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직권조치 하였음을 공고합니다.

2020년 05월 11일

진도읍장



세대주성명	성명 생년월일	주소	직권조치사항 직권조치일자
차**	차** 1956-11-24	전라남도 진도군 진도읍 서부해안로	무단전출거주불명등록 2020-04-22